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체이스웨이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고 영문자는 "Chaseway Partners Co., Ltd."로 한다.</p>	<p>제 1 조 (상호) 본 회사는 '체이스웨이자산운용 주식회사'(이)(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하고 영문자는 "Chaseway Asset Management Co., Ltd."로 한다.</p>
<p>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영컨설팅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3. 상기 각 호와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p>제 2 조 (목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 아래 항목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2.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본시장법 제40조에 의한 경영업무 3.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본시장법 제41조에 의한 부수업무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 ② 회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허가 취득 또는 금융위원회에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상충 방지무무를 준수한다
<p>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방법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 4 조 (광고방법) 본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aseway.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p>
<p>제 38 조 (임원의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p>제 38 조 (임원의 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법정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수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정기주주총회 시까지 보결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p>제 45 조 (이사회)</p> <p>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 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p> <p>② 이사의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③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이 경우 정관상의 이사회는 모두 주주총회로 본다.</p>	<p>제 45 조 (이사회)</p> <p>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 사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p> <p>② 이사의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p> <p>③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정관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이 경우 정관상의 이사회는 모두 주주총회로 본다.</p> <p>④ 이사회는 이사의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3. 3.></p> <p>⑤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6. 3. 3.></p>
<p>제 45 조의 1 (이사의회의 권한)</p> <p>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이사 등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표이사의 선임 나.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획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이사 경업의 승인 3.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이사·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 및 거래행위 8.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집행책임자 중 경영전략수립 등 전략기획업무, 재무, 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업무,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p>제 45 조의 1 (이사의회의 권한)</p> <p>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이사 등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표이사의 선임 나.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획 및 자산의 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이사 경업의 승인 3.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이사·임원 등과 회사간 이해상충 및 거래행위 8.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집행책임자 중 경영전략수립 등 전략기획업무, 재무, 예산 및 결산회계 등 재무관리업무, 자산의 운용 등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p>10.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1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12.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9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3. 3.> 10.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에 관한 사항 1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12. 기타 관계 법령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거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 50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5년간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0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1주간 전부터 5년간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재무상태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7 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등) 발기인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p>	<p><삭제></p>
<p>위와 같이 체이스웨이파트너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2024년 3월 18일 발기인 체이스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정순 (인) 법인등록번호 110111-7664596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층 417-에 이호(여의도동, 파크원 타워1) 인수 주식 수 1,500,000주</p>	<p><삭제></p>
	<p>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례) 제1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 등</p>

	록이 된 후 적용한다.
--	--------------